

부산지방법원 2023. 2. 28 선고 2022가단34394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

대한민국

피 고

오○○

변 론 종 결

2023. 2. 7

판 결 선 고

2023. 2. 28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김○○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10. 20. 체결된 증여계약, 별지 목록 제2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3. 25.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김○○에게 가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20. 10. 21.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. 별지 목록 제2,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21. 3. 25.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. 별지 목록 제4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21. 3. 25. 접수

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자백간주에 따른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 ○○○